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2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서왕진 · 차규근 · 박은정
황운하 · 백선희 · 강경숙
장철민 · 김정호 · 정춘생
김종민 · 김준형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시·도지사가 제98조제 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도지사 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 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 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 .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 . 허가 . 승인 . 면허 . 협의 . 해 제 . 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 ----- ----- ----- ----- ----- ----- ----- ----- ----- ----- ----- ----- ----- ----- 1. ~ 21. (현행과 같음)
1. ~ 21. (생략) ＜신설＞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 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